

다. 作成範圍

- 국유재산 : 취득·처분·관리환으로 구분 작성
- 공유재산 :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구분 작성

1) 국유재산의 경우

변경권한	조 항	내 용
국무회의심의 (대통령제가)	제7조4항6호 제9조 (2항5,8호 제외) 제13조	○ 재산의 위치·규모·형태 및 용도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(재산가격 : 5천만원이하) ○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매각 ○ 공공목적 매각(교육, 주택, 농업, 공업 등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목적) ○ 양여
총괄청 (국장전결)	제6조 제7조 1항4호 4항3호 4항4호 4항5호 제8조 제9조(2항5호)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(4항)	○ 관리환 ○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중 · 최대폭 5m 이상의 폐도, 폐하천 등의 매각 · '81. 4. 30 이전 점유 종교용지 매각 · '86. 12. 31 이전점유 나병환자 집단정착촌 매각 ·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 매각 ○ 법규에 의한 매각(도시계획법 등) ○ 공장부지 전체면적의 20%미만 토지 매각 ○ 특별회계, 기금소관재산의 매각 ○ 교환 ○ 신탁 ○ 무상대부(재정경제부 소관재산에 한함)
관리청[시·도] (자체변경)	제5조 제7조 1항1호, 2호 제5조 제7조 1항1호, 2호	○ 취득 ○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중 총괄청변경사항을 제외한 재산 · 일단의 면적의 200㎡이하(광역시 이상) 300㎡이하(기타시), 700㎡이하(군지역) 및 국가 이외의 자와 공유지분 토지 · 최대폭 5m이하 · 건축가능 최소면적 미달재산 · '81. 4. 30이전 점유 사유건물의 바닥면적 2배이내 토지 · 환수된 은닉재산 매각(자진반환, 선의취득)